#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808

발의연월일: 2020. 9. 11.

발 의 자:남인순·강민정·강선우

고영인 • 권인숙 • 김승원

김용민 · 김주영 · 박성준

송재호 • 양이원영 • 양정숙

오영환 • 윤재갑 • 이성만

아 이용빈 · 임종성

정성호 · 정정순 · 정춘숙

주철현 · 최종윤 · 최혜영

허종식 • 홍성국 • 황운하

(2791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해당 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·운영의 주체를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어 국가 또는 시·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·운영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.

이에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·운영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개정함으로써 국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17).

법률 제 호

##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17의 제목 "(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)"를 "(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·운영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"를 "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"으로, "산후조리원을"을 "산후조리원(이하 이 조에서 "공공산후조리원"이라 한다)을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에따른 산후조리원"을 "공공산후조리원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15조의17(지방자치단체의 산후 제15조의17(공공산후조리원의 설 조리원 설치) ① 특별자치시장 치・운영) ① 국가 또는 지방 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 자치단체는-----군수 ·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 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 -----산후조리원(이하 이 조에서 "공공산후조리원"이 치 · 운영할 수 있다. 라 한다)을-----.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② 공공산후조리원-----설치 · 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 리 대책 마련, 모자동실 설치・ 운영,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 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